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-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확산,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,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II. 주요골자

가.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

-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·운영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
-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

나.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

-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

다.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

-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(중선거구제)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
-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
-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, 각종 교육·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

III. 검토의견

-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(2000. 11. 6)된 바 있으며,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2005년 제156회 정례회에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,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임기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뿐더러 임기연장에 따른 장·단점이 상존하므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고, 제4대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로 동 의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(지방자치법 제59조).
-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(2005. 12. 6) 조례준칙 개정안에 기초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한 것으로, 주민자치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임기를 조정한 내용 등입니다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1). 안 제1조 내지 안 제6조제3항, 안 제15조, 안 제17조제2항 및 제5항, 안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“동 사무소”로 규정된 조문을 “동”으로 개정하고, 안 제7조제7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” 하도록 하였는데, 이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흥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,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유사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·동장이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.
 - 2). 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1조제4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·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이용 주민에 대한 제재 조치시 반드시 “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”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안 제18조제5항에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, 교육·연수 참여 등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은,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의식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.

3). 안 제17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3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개정내용으로써,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문 수를 5인으로 늘이는 한편,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, 주민자치위원의 잦은 교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저해가 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가 짧아 축적된 역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가 반영한 것으로 보며,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원칙(제3조제5호) 및 기능·책무(제16조·제18조) 등 관련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나, 반드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.

IV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第8條 (事務處理의 基本原則)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조 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별표 1]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8조관련)

구 분	시·도 사 무	시·군·자치구사무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. 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지원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

○ **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**

제3조(원칙) 주민자치센터(이하 “자치센터”라 한다)와 주민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
2.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
3. 읍·면·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
4.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
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

제16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주민의 문화·복지·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3.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8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·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, 근무시간,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